

기 중 비산 먼지 발생 저감) 및 환경 오염 저감(기존 라텍스 콘크리트에 대비한 라텍스 폐기물, 라텍스 누출 등이 없음)을 갖는 교면 포장 공법임.

<범위>

활성실리카, 분말 수지 등을 포함한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과 기존 노면 절삭/청소 공정 및 혼합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저감장치를 갖는 스킵 로더 및 모빌 믹서를 사용한 교면 포장 공법(MFC-4공법)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983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7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(주)하이텍코리아(이승원), ②(주)다산건설턴트(이해경), ③ 대림산업(주)(배원복), ④(주)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(임종선)

나. 전화번호 : ①02-3463-4080 ②02-2222-4314 ③02-2011-7114 ④02-3498-2600

2. 명칭 :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L형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는 가설교량 및 그 제작방법(TRM공법)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교량 / 가설시설물

<기술의 요지>

TRM공법은 I형 강재거더의 하부에 별도의 긴장장치 없이 선행하중인 프리스트레스력을 도입하고 강재거더의 하부플랜지와 복부의 경계부에 L형 보강재를 설치하여 프리스트레스력을 유지시킴과

동시에, 단면강성 증대 및 중립축 이동을 통해 부재의 구조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교량의 내하력을 증대시키는 '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L형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는 가설교량 및 그 제작방법'임

<범위>

I형 강재거더의 하부에 별도의 긴장장치 없이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압력을 가해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기술,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I형 강재거더의 상부 또는 하부플랜지와 복부의 경계부에 L형 보강재를 부착하는 기술, 프리스트레스력 및 L형 보강재가 도입된 I형 강재거더를 현장조립하여 급속시공하는 기술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-410호
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23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회사명	등록번호	등록일	소재지
(주)시그나이트파트너스	2020-336	2020.7.17	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, 12층(청담동)

●산림청공고제2020-309호

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23일

산 립 청 장

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광업법」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「광산안전법」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